

# 심사보고서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59
----------	-----

2017. 9. 11(월)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7년 8월 21일

다. 회부일자 : 2017년 8월 24일

라. 상정일자 : 2017년 9월 4일

- 제3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오진섭)

가. 제안사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2호(사용료 감면) 개정으로, 충청북도 출연기관인 충북인재양성재단, 충북여성재단,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도록 도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 대 상 : 충청북도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용기관(도 출연기관)
  - 충북인재양성재단, 충북여성재단,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 감면내역 :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 적용시기 : 2018. 1. 1. 부터
-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제1항 제4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2호(사용료 감면)

### □ 충청북도 출연기관 현황

#### <충북인재양성재단>

- 설 립 일 : 2008. 3. 18.
- 설립목적 :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우수 인재 발굴·양성
- 주요사업 : 장학금 지원, 차세대 인재양성, 핵심인재관리 등
- 소 재 지 :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문화동 15)
- 사용면적 : 69m<sup>2</sup>
- 적용시기 : 2018. 1. 1. 부터

#### <충북여성재단>

- 설 립 일 : 2017. 2. 17.
- 설립목적 : 지역실정에 적합한 여성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충북여성 의 능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에 기여
- 주요사업
  -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가족 역량강화 교육, 1366 운영
  - 여성·가족 정책조사 연구 및 지원, 성 주류화 과제 컨설팅
- 소 재 지 :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7(지북동)
- 사용면적 : 695.66m<sup>2</sup>
- 적용시기 : 2018. 1. 1.부터

####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 설 립 일 : 2005. 11. 7.
- 설립목적 :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보존관리체제 확립
- 주요사업
  - 문화재 조사·연구,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사업
  - 지역 역사문화유산 자료수집 및 보관 전시
  -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의 위임, 위탁사업 등
- 소 재 지 :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393(송정동)
- 사용면적 : 1,960.04m<sup>2</sup>
- 적용시기 : 2018. 1. 1.부터

### 3. 검토보고 요지

- 이번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2호(사용료 감면) 개정으로,
  - 충청북도 출연기관인 충북인재양성재단, 충북여성재단,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임.
- 현재 충북인재양성재단은 연간 229만8천원, 충북여성재단은 1,335만 4 천원,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은 3,625만원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음.
- 금번 감면동의안으로 현재의 출연기관 임대사용료를 도비로 지원하고, 다시 납부 받는 형식에서 벗어나 불필요한 행정과정을 제거함으로써 행정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어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안번호	제659호
의결 연월일	2017년 월 일 (제358회)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제출연월일	2017년 8월 21일

#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안 번호	659
----------	-----

제출연월일 : 2017년 8월 21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2호(사용료 감면) 개정으로, 충청북도 출연기관인 충북인재양성재단, 충북여성재단,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도록 도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 2. 주요내용

###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 대상 : 충청북도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용기관(도 출연기관)
  - 충북인재양성재단, 충북여성재단,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 감면내역 :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 적용시기 : 2018. 1. 1. 부터
-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제1항 제4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2호(사용료 감면)

## □ 충청북도 출연기관 현황

### <충북인재양성재단>

- 설립일 : 2008. 3. 18.
- 설립목적 :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우수 인재 발굴·양성
- 주요사업 : 장학금 지원, 차세대 인재양성, 핵심인재관리 등
- 소재지 :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문화동 15)
- 사용면적 : 69m<sup>2</sup>
- 적용시기 : 2018. 1. 1. 부터

### <충북여성재단>

- 설립일 : 2017. 2. 17.
- 설립목적 : 지역실정에 적합한 여성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충북 여성의 능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에 기여
- 주요사업
  -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가족 역량강화 교육, 1366 운영
  - 여성·가족 정책조사 연구 및 지원, 성 주류화 과제 컨설팅
- 소재지 :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7(지북동)
- 사용면적 : 695.66m<sup>2</sup>
- 적용시기 : 2018. 1. 1.부터

###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 설립일 : 2005. 11. 7.
- 설립목적 :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보존관리체제 확립
- 주요사업
  - 문화재 조사·연구,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사업
  - 지역 역사문화유산 자료수집 및 보관 전시
  -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의 위임, 위탁사업 등
- 소재지 :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393(송정동)
- 사용면적 : 1,960.04m<sup>2</sup>
- 적용시기 : 2018. 1. 1.부터

## 3. 관계법령 : 붙임

## 관련법령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7.20. 2016.7.12>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 □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우수 인재를 발굴·양성하기 위하여 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충북인재양성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2. 충북도민 및 도민자녀 장학사업
3. 과학·문화 등 영재교육 지원사업
4. 충북인재양성 정보화 시스템 구축
5. 정부기관 또는 자치단체 등에서 위임·위탁하는 사업
6. 기타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제7조(기금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와 시·군의 출연금
2. 개인·기관·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영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8조(출연)**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재단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 □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 충청북도 여성의 경쟁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산 및 운영경비)**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출연금
2. 개인·기관·단체 등의 출연금
3. 제9조에 따른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가족·다문화·청소년 관련 정책 연구·개발 사업
2. 여성의 문화활동과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3. 양성평등 및 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4. 여성능력 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5. 여성인권 및 리더십 향상을 위한 사업
6. 지역전문여성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강화 사업

7.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 사업
8. 여성·가족정책 관련 교육 및 정책개발 수탁사업
9.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와 인근지역 민족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보호·관리를 위한 충청북도 문화재 연구재단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수탁사업 등을 수행한다.<개정 2011.4.1>

1. 문화유산의 조사(지표조사, 발굴조사, 학술조사 등을 포함한다)와 연구 및 자료발간
2. 문화유산(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매장문화재를 포함한다)의 보호·관리
3. 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수장 전시
4.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5. 그 밖에 본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6조(재산출연)** 연구원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출연금으로 한다.

1. 충청북도 및 시·군의 출연금 또는 현물
2.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 및 기업체, 대학 등 기타 출연금

**제9조(운영비 등 지원)** 도지사는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별첨]

출연기관 사용료 납부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년도	사용면적 (m <sup>2</sup> )	부 과 액		
			계	사용료	부가세
계			132,192	120,175	12,017
충북인재양성재단	2015	69	2,350	2,136	214
	2016		2,298	2,089	209
	2017		2,298	2,089	209
충북여성재단	2017	695.66	13,354	12,140	1,214
충청북도문화재단 연 구 원	2015	1960.04	38,355	34,868	3,487
	2016		37,287	33,898	3,389
	2017		36,250	32,955	3,295

※ 충북여성재단 2017. 2. 17. 설립